

June 17, 2015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2015. 6. 10.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예고안은 기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규제체계의 일원화: 전산설비·정보처리 -> 정보처리

현행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정보처리’ 위탁을 금감원 보고대상으로, ‘전산설비’ 위탁을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하여 규제체계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금감원 보고’만으로 규제를 간소화하였습니다(안 제7조).

2. 정보처리 보고 원칙 변경: 사전보고 -> 사후보고

현행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을 고려함 없이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업무(인사, 예산 등) 정보, 법인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 모든 정보처리를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사전보고절차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개인과 관련된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

3. 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및 재위탁 허용

현행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정보처리 국외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을 폭넓게 허용하는 각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소 과도한 면이 있으며, 특히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재수탁업체의 적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정보처리 국외위탁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4조 제1항), 재위탁 역시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위탁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수탁업체의 준수사항(특정 정보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 및 감사의무 준수 등) 및 책임관계(연대책임)를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 제4항).

4. 일률적 표준계약서의 사용의무 철폐

현행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정보처리 위탁계약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사항(데이터 접근 통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재판관할 등)만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조 제3항).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입법예고안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업무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위탁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높은 비용절감 효과 및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또한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40	E-Mail. jsyoon@shinkim.com
● 조영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36	E-Mail. yhjo@shinkim.com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28	E-Mail. tsjeong@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